

광주지방법원 2022. 6. 28 선고 2021가단92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3. E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F 사이에 체결된 2018. 4. 2.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소유권보존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F에게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8. 5. 3. 접수 제148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8. 5. 3. 접수 제1481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가 신용카드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자, F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1248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1. 위 법원으로부터 ‘F는 원고에게 14,362,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정본을 득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0. 2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F의 부 G이 2014. 1. 27. 사망하고, 모 H이 1995. 10. 22.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과 F가 각 1/4씩 망인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F와 피고들은 2018. 4. 2. 망인들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각 1/3씩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들은 2018. 5.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3의 지분별로 협의분할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F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인 2018. 4. 2.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채무 등 총 16,678,751원의 채무초과상태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F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F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참조).

피고들은 “F는 2018. 4. 2. 기준 연체 상태가 아니었고, 부친이 사망할 당시 피고들에게 ‘F에게 나누시 I 전 1,225㎡를 증여하였으므로, 나머지 재산을 피고들이 나누어 가지라’는 유언을 함에 따라 F가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들은 F의 채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지분으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의 상속지분 1/4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소연

별지